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
발 의 자 : 이병도·이영실·김화숙·여명·이상훈·김기덕·박순규·신정호·유용·이광호·김정태·봉양순·채인묵·김용연·이광성·김제리·김소양·임종국·김혜련·김동식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지원 강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,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금액을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하고, 건강관리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.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월 70만 원”을 “월 100만 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: 월 50만 원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지원 사업)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 보조비 지원 : <u>월 70만 원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2.·3.</u>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지원 사업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<u>월 100만 원</u></p> <p><u>2.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: 월 50만 원</u></p> <p><u>3.·4.</u>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<u>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